



## 규정류(제정·개정)입안서

1. 규정류명: 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
2. 규정류(제정·개정)사유: 「사립학교법 제32조의3(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)」 준용
3. 주요내용: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규정 개정(외부전문가 1명 -> 2명)
4. 시행예정 또는 요청일: 공포일로부터
5. 참고사항
  - 가. 관련규정: 해당내용 없음
  - 나. 예산조치: 해당내용 없음
  - 다. 관련부서: 해당내용 없음
  - 라. 신구조문 대비표

2026년 5월 6일

소관부서 : 총무처장 양희창

관련부서 : 기획처장 홍정화

# 신·구조문대비표

규정명 : 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이 유
<p><b>제1조~제2조</b> (생략)</p> <p><b>제3조(구성)</b>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,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, 제2호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 <del>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</del>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22.2.24.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·직원 및 재학생 (개정 2022.2.24.)</li> <li>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(개정 2022.2.24.)</li> <li>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(개정 2022.2.24.)</li> </ol> <p>② (생략)</p>	<p><b>제1조~제2조</b> (생략)</p> <p><b>제3조(구성)</b>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,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, 제2호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 <del>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</del> <b>&lt;삭제&gt;</b>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22.2.24.)<b>(개정 2026.0.00.)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·직원 및 재학생 (개정 2022.2.24.)</li> <li>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(개정 2022.2.24.)</li> <li>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(개정 2022.2.24.)</li> </ol> <p>②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칙</b></p> <p><b>제1조(시행일)</b> ①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</p> <p><b>제2조(적용례)</b> 본 규정은 ①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<b>관련법령(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)의 개정일(2026.05. 12.)</b>로부터 소급 적용한다.</p>	<p>사립학교법 제32조의 3(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) 규정 준용(외부전문가 1명 -&gt; 2명)</p>

# 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장안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기금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설치하는 기금운용심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
2. 기금운용 계획 중 기금인출 사용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기금운용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의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

**제3조(구성)**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,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, 제2호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**2명**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 ~~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~~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22.2.24.) (개정 2026.0.00.)

1.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·직원 및 재학생 (개정 2022.2.24.)
2.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(개정 2022.2.24.)
3.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(개정 2022.2.24.)
- ②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본교의 총무처 재무팀 직원으로 한다.

**제4조(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2년을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**제5조(위원장등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사무를 총괄한다.

-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심의회 실무를 관장한다.

**제6조(회의 및 의결)**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매 학년 초에 소집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.
- ③ 심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. 단,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
**제7조(회의록)**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- ②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고, 위원 중 3인 이상을 호선하여 간(間)서명을 한다.

**제8조(관계부서의 협조)** 심의회는 관계부서에 자료 제출이나 제반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, 협조를 요구받은 부서는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.

**제9조(자문단)** ①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.

- ② 자문단에게는 소정의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0조(비밀유지 및 면책)** ①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,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, 기타 기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② 심의회 위원은 기금운용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·의결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손실 발생만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
**제11조(운영비등)** 심의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및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2조(사무관장)** 심의회 사무는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장한다.

**제13조(보칙)**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① 이 규정은 2018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본 규정은 ①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(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)의 개정일(2018.05. 29.)로부터 소급 적용한다.

#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① 이 규정은 202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①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본 규정은 ①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(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)의 개정일(2026.05. 12.)로부터 소급 적용한다.